

대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다28365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다283650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1. 9. 17 선고 2020나61345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형모

판 결 선 고 2022. 1. 27.

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0나61345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동원, 주 심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천대엽